



■ 대한가금처리협회 발족

전국 도계장 모임인 대한가금처리협회가 지난 7월 1일 발족되었다.

보다 위생적인 도계품의 생산, 상거래 질서유지, 화합과 단합으로 도계인들의 권익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난 6월 19일 경기도 수의사회관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한바, 선출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김달성 (한서식품)
- 부회장: 이영돌 (인성식품)
한인석 (우인식품)
류종래 (류성브로일러)
- 이 사: 신정일 (구량식량)
조순희 (경기식품)
심창섭 (한미식품)
안병진 (성성식품)
윤석환 (삼성브로일러)
이재오 (부산산업사)
이건남 (건영식품)
조동호 (신미식품)
김창환 (대한브로일러)
- 감 사: 이찬모 (천호인티그레이션)
박경환 (남경산업)
- 총 무: 신정일 (구량식량)
- 주 소: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80-4
- 전 화: 922-1913 · 4

■ 농수산부 전화번호 변경

(代)	503-7200
농 수 산 부 장 관	503-7201~2
장 관 비 서 관	503-7203
차 관 실	503-7204
차 관 비 서 관	503-7205
제 1 차 관 보	503-7206
제 2 차 관 보	503-7207
기 획 관 리 실 장	503-7210
기 획 예 산 담 당 관	503-7211
행 정 관 리 담 당 관	503-7212
법 무 담 당 관	503-7213
비 상 계 획 관	503-7214
비 상 계 획 담 당 관	503-7220
공 보 관	503-7208
총 무 과 장	503-7230
감 사 관	503-7277
감 사 담 당 관	503-7278
조 사 담 당 관	503-7279
농 수 산 통 계 관	503-7220
통 계 관 리 담 당 관	503-7221
농 산 통 계 담 당 관	503-7222
유통경제통계담당관	503-7223
수 산 통 계 담 당 관	503-7224
농 업 정 책 국 장	503-7240
농 정 과 장	503-7241
유 통 과	503-7243

농촌소득과	503-7242
가격관리과	503-7244
국제협력과장	503-7245
농업금융과장	503-7246
농산국장	503-7250
미산과장	503-7251
전작과장	503-7252
비료과장	503-7253
농업기계과장	503-7254
식물방역과장	503-7255
농지국장	503-7260
농정과장	503-7261
수리과장	503-7262
개량과장	503-7263
조성과장	503-7264
특정지역개발과장	503-7265
특작국장	503-7270
특작과장	503-7271
잡업과장	503-7272
채소과장	503-7273
과수과장	503-7274
축산국장	503-7280
축산과장	503-7281
낙농초지과장	503-7282
사료과장	503-7283
가공이용과장	503-7284
가축위생과장	503-7285
양정국장	503-7290
양정과장	503-7291
식생활개선과장	503-7292
양곡관리과장	503-7294
보관수송과장	503-7296
회계과장	503-7298

■ 한미 낙농경영 단기과정교육

한국낙농학회(회장 이학철)는 미국사료곡물협회(회장 박영인)후원으로 제2회 한미 낙농 경영단

기과정교육을 오는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대농대에서 개최한다.

대상은 낙농 지도기술요원이며, 국내 낙농산업 발전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축협도지부 은행업무 실시

축협중앙회(회장 이득룡) 도지부는 7월부터 은행업무를 시작했다.

도시유휴자금의 농촌축산자금화로 축산부문 투자재원 확대조성을 위해 지난 5월 8일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으로부터 전국 8개 도지부의 영업소 신설인가를 얻어 부산, 대구, 전주 등 지방도시에서 개점하게 되었다. 나머지 5개 도지부도 8월까지는 문을 열게 됨으로써 이미 영업중인 본부 영업부와 성동지소를 합쳐 축협중앙회 점포수는 모두 10개소로 늘어났다.

축협의 은행업무는 각종 예금, 적금(당좌, 가계종합,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계우대적금, 상호부금) 및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 국가, 공공단체, 금융기관의 업무대행 등 일반 은행업무와 내·외국환, 외자도입, 정부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축산진흥기금조성 등 부수 업무도 다루게 된다.

■ 낙농육우협회 세미나 개최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유윤수)는 한국 낙농업 및 육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85년도 낙농육우 세미나」를 지난 7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낙농·육우산업의 현황을 재조명하고 현재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이날 세미나에는 전국 양축가, 업계 인사 600여명이 참석, 열기면 질의응답이 오갔다.

유윤수회장의 인사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허신행박사의 「2000년대를 향한 축산전망」에 대하여 소값파동, 우유체화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수입을 억제하고, 유제품 특소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우유급식과 군납품 우유의 확대실시를 강조했다.

서울우유 강성원 조합장은 「낙농경영의 안정대책」이란 발표에서 분유 등 유제품 수입의 중단을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낙농육우산업의 불황과 낙농가와 육우농가의 경영현실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농수산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 응답이 교환되었다.

■ 한국초지학 회장에 김영진씨

한국초지학회는 지난 7월 6일 농경연회의실에서 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김영진 농경연 원장을 선출했다.

■ 사료분석 연구 본격화

한국사료협회(회장 마영호) 부설 사료기술 연구소는 최근 각종 성분분석용 기자재의 시험가동을 끝내고 개관 2개월만에 본격적인 연구 업무에 돌입했다.

특히 아미노산, 미량물질, 비타민, 유해독성물질에 대한 분석방법의 정립과 기기조작의 연마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업무를 짧은 기간동안에 상당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료 기술 연구소는 앞으로 모든 분석업무가 정상가동하게 되면 배합사료원료의 정확한 영양소 함량 및 품질 상태를 사전 점검하여 사료효율증대에 큰 몫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적배합사료의 생산기술 및 최신기술정보를 양축가에 보급하고 배합사료의 미생물 오염대책을 강구하여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분당공업 세미나

한국옥수수 가공협회(회장 박성문)는 지난 24일 하오 시내 퇴계로소재 세종호텔에서 조익래농수산

부차관을 비롯한 관계인사 및 회원사 임직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옥수수전분당공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익래차관은 치사를 통해 「옥수수가공업은 곧 우리나라에 식생활패턴을 바꿔놓은 장본인으로서 그 노고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치하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식생활개선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성문회장도 개회사를 통해 「국민식생활개선은 우리 회원사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전국민이 옥수수전분 등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AIDS (후천성 면역결핍증) 음성반응 검사서 첨부 곤란표시

혈액분획제제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제약업체들은 최근 보사부가 혈액제제의 수입허가조건으로 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반응검사서를 제출도록 한 것은 국내외 실정을 감안치 않은 것이라고 지적, 난색을 표하고 있다.

■ 간호와 관련된 사례

- 간호원의 주사로 신경마비가 후유증으로 생긴 경우 환자의 손해배상은 사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 비록 간호원이 주사하여 주사후 신경마비 또는 근위축 등과 같은 후유증이 야기되었어도 병원은 이에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 비록 간호원의 주사과실로 환자에게 후유병이 생겼더라도 그 배상책임은 병원개설자에게 있다.

■ 쇠고기 저장비용 월간 2천만원

매일경제신문은(7월 31일) 축협 휘경동 냉동창고를 취재보도하는 기사에서, 이곳에는 현재 약 천톤의 쇠고기가 저장되어 있으며, 총저장능력은 지육 5,500t, 정육 6천톤에 이른다고 하였다.

요즘처럼 전 창고가 풀가동하지 않아도 하루 전력소비가 9,000여 KW로 한달 전기료가 2천만원이라고 밝혀, 쇠고기를 한달 저장하는데 전기료만 톤당 2만원이 되어 1년간 저장할 경우 쇠고기 값은 톤당 24만원이 추가되게 된다.

■ 식품유통학회 학술발표회

한국식품유통학회 학술발표회가 7월 13일 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남아 제국의 농산물 유통제도 비교연구」

김성훈(중앙대)

「주요국의 육류등급제에 관한 비교연구」

문기한(축협중앙회)

「농산물 유통개선과 유통금융」

이호경(농협중앙회)

「육류 수요합수 형태에 관한 고찰」

김병호(농경연)

「Theories & Policies on Marketing Reform in China」 이종영(FAO)

■ 「우유가 인체에 어떤 이로움을 주는가」

심포지움

농수축산신보사(대표 한남석)는 농수산부, 축협, 유가공협회 후원으로 「우유, 인체에 어떠한 이로움을 주는가」라는 주제로 8월 6일 무역회관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식품의학 또는 식품영양학 측면에서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우유가 과연 인체에 얼마만큼의 이로움을 주는가를 밝혀보자는데 뜻을 둔 것으로 학계, 업계 인사 농수산분과위원회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주제발표 내용〉

◇ 좌장: 유재창(건국대 축산대)

• 「우유의 소비현황과 생산전망」

김현욱(서울대 농대)

• 「식습관과 암」(우유 및 유제품의 위암억제 효과)

矢野一行(일본 埼玉의대)

◇ 좌장: 신형태(성균관대 낙농과)

• 「성인병 예방과 우유식」

유태종(고려대 식공과)

• 「소아발육과 우유」

이근(이화여대 부속병원)

■ 농축산물 수출입요령

'85년도 하반기 및 '86년도 상반기 수출입 기별 공고 총칙 제6 조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농수산부장관의 수출입 추천품목에 대한 수출입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7.3. 농수산부령)

부 칙

1. 이 공고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공고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추천(확인등) 기관의 추천(확인등)을 득한 분은 이 공고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수출입추천 대상품목의 수출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품목별 수출입요령상에 명시된 서류를 농수산부장관(수출입요령상에 수출입추천 기관이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내의 경기동향, 국제수지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요령상의 수입추천기준에도 불구하고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추천요령(생략) 관계부처: 농수산부국제협력과 (591-1407)

■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령 개정령

대통령령 제11,712호(6.28)로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되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물위생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축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거위·칠면조·메추리 및 꿩 다만, 메추리와 꿩은 사육하는 것에 한한다.
2. 토끼

제3조 (검사원의 임명등) ①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은 수의사·수의사자격이 있는 수의 업무 담당공무원 또는 공수의중에서 이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검사원은 근무기관의 장 또는 위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축산물 검사업무에 종사한다.

③ 검사원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자체검사원의 지정등) ①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수의사중에서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여야 한다.

1. 2년이상 당해 축산물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시·도지사는 자체검사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의 경영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체검사원이 지정을 해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작업장의 경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의 자격이 없는 것이 밝혀질 때
2.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 자체검사원의 승인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적용의 제한) 법 제2조의 제2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축"이라 함은 거위·칠면조·토끼와 사육하는 메추리 및 꿩을 말한다.

제6조 (수축의 검사) 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축"이라 함은 법 제2의2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안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수축으로서 거위·칠면조·토끼와 사육하는 메추리 및 꿩을 말한다.

제7조(집단급식류경영자)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단급식소경영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다수인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학교·병원·기숙사 기타 후생복지기관등의 급식시설의 경영자를 말한다.

제8조 (미검사품의 처리)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 또는 수거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이하 "미검사품"이라 한다)은 소각 또는 매몰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원의 검사결과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가축의 사료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미검사품의 소각·매몰 및 가축의 사료등으로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청문의 절차) 생략

제10조 (포상금의 지급) 생략

제11조 (과태료의 부과) 생략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개정이유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처리법으로 개정(법률 제3,763호 1984. 12. 31) 되어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관리업무가 농수산부에서 보건사회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관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하고 청문제도 및 과태료 부과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관리업무가 농수산부에서 보건사회부로 이관됨에 따라 축산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피육가공품·유가공품 및 난가공품을 축산물의 범위에서 제외함(령 제2조)

나. 종전에는 식품제조업자·식육판매업자에 한하여 검사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모법의 개정으로 집단급식소경영자에게도 확대·적용하게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집단급식소경영자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다수인에게 포식을 공급하는 학교·병원·기숙사 기타 후생복지기관등의 급식시설의 경영자로 정함(령 제7조).

다. 시·도지사가 비축장 또는 집돈장설치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등의 처분에 앞서 청문을 행할 경우에는 7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서 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령 제9조).

라. 농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과태

료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및 해당과태료금액을 명시한 서면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과태료금액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별로 정하여 이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농수산부는 7월3일자로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을 공포했다.

그 내용을 발췌 게재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을 “축산물 위생처리법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조 ③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작업장시설의 위생검사
 2. 축산물의 위생관리검사
 3. 수축 및 축산물의 검사
 4. 착유하는 유우 또는 양의 검사
 5. 불합격수축 및 축산물의 처분
 6. 검사기록의 유지 및 검사상황의 보고
 7. 기타 수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 제7조 ②작업장의 경영자는 검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자체검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제1항중 “양도자의 인감증명서와 허가증을 “상속이나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허가증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양도·양수의 경우에 한한다)”를”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수축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도착하는 날의 3일전까지 국립동물검역소장(지소장을 포함한다)에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의 2(미검사품의 처리방법) ①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원이 미검사품을 압수증 또는

수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 3서식의 압수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거증을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사품의 소각·매몰의 기준 및 가축의 사료등으로 활용을 위한 검사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계육 합격표시에 관한 부도 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2]

작업장의 시설기준

4. 특급도계장

특급도계장에는 1급도계장 시설외에 부지면적이 1,700㎡이상으로서 냉장·냉동실, 제빙시설 또는 냉각시설, 포장시설, 갱의실, 목욕실 및 휴게실을 갖추어야 한다.

가. 냉장·냉동실 면적은 66㎡이상으로 작업장의 처리내용에 충분한 면적과 기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자동식으로 설비되어야 하며, 도살방혈시설, 탕지시설·탈우시설·잔모처리시설·내장적출시설·냉각시설·포장시설의 순서로 배치되어야 한다.

다. 목욕실·휴게실 및 갱의실은 종업원 수에 알맞는 충분한 면적을 갖추고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5. 1급도계장

가. 1급도계장에는 계류사·생체검사실·격리실·작업실·검사실·소독실·오물처리장 및 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류사에는 가금등을 적당하게 계류 또는 수용할 수 있게 구획되어야 하며, 바닥은 돌콘크리트·벽돌등 불침투성재료로 시공하고 급수시설과 적당한 배수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 생체검사실은 검사에 필요한 보정시설 및 조명등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하며,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로 시공하고 청소용 편리하도록 시설하여

야 한다.

라. 작업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도체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류는 스테인레스철재 또는 동등한 성질의 것으로 설비하여야 한다.

(2) 작업실에는 도살방혈시설·탕지시설·탈우시설·

[별표 3]

수축의 도살·해체방법

2. 가금 및 토끼

조제·처리·저장하는 작업과정은 완전히 청결하고 위생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가. 가금의 처리는 도살·열탕·탈모·박피·해체·수세·냉장 및 포장등의 순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도살은 충분한 방혈을 거쳐야 하며 도체식용부 위에 상처나 울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탕지는 완전히 죽은 후에 하여야 하고 과열등을 피하여야 하며 열탕은 항상 청결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라. 탈모는 외모 및 자모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도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토끼는 박피를 하여야 한다.

마. 가금의 해체작업은 머리, 발, 모이주머니, 허파, 식도, 기도, 내장등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하고 해체된 가금육 또는 토끼육은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냉장·냉동 및 포장은 해체되어 식용부위로 분리된 부분을 신속히 빙수에 냉각하여·실시하여야 한다.

(1) 포장된 형태로 공장에서 운반될 가금은 온도를 5℃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포장된 형태로서 24시간 저장할 가금은 내부온도를 2℃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2) 빙수냉각

(가) 음료수에 적합한 물로 제조된 얼음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위생적인 방법으로 취급·저장되어야 한다. 다만, 제빙기가 없는 도계장에

서는 수냉각 장치에 의하여야 한다.

(나) 해체된 가금은 다음에 규정된 기간내에 5℃이하로 냉각하여야하며 포장시까지의 이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도체중량	시 간
1.8kg이하	4
1.8kg초과 3.6kg미만	6
3.6kg이상	8

(다) 계속 재가공을 위하여는 5℃이하의 온도를 지할 수 있는 냉각탱크에 24시간 보존할 수 있다.

① 보존기간중에는 5℃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얼음의 보충이나 기타의 조작을 하여야 한다.

② 24시간 냉각탱크에 보존될 가금은 5℃이하의 온도로 가금을 유지할 수 있는 냉각시설안에 두어야 한다.

③ 세척·냉각제수는 포장시의 습기 흡수율 및 수분함유율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원은 습기흡수도 및 수분함유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량검사를 할 수 있다.

④ 판매용으로 포장·냉동 또는 냉동포장될 가금의 세척·냉각제수로 인한 최대허용습기 흡수량 및 수분함유량은 포장시에 다음에 정한 백분율을 넘지 못한다.

가금처리품의 종류 및 중량세척후 증가된 중량의 백분율

칠면조 9kg 이상	4.5%
4.5kg미만 9kg미만	6%
4.5kg이하	8%
계 류 2.2kg	8%
기타가금	6%

⑤ 냉장용 가금의 최대허용습기흡수량 및 수분함유량은 증가된 중량의 백분율이 빙장때에는 12%를 넘지 못한다.

(3) 공기냉각의 경우에는 해체후 24시간내에 체

내부온도가 5℃이하로 되어야 하고, 공기유통이 잘되어야 한다.

같이 구분한다.

[별표 4]

수축 및 축산물의 검사기준

3. 난검사

가. 품목별기준

(1) 계란(판매를 목적으로 포장 및 표시를 한 것으로 검사를 의뢰한 것)은 그 중량에 따라 다음과

계	란	중 량
특	란	61g 이상
대	란	55g~60g
중	란	48g~54g
소	란	42g~47g
경	란	42g 미만

나. 등급기준

구분	검사구분	등급				등 의
		특 급	1 급	2 급		
투광검란한 경우	난 각	청결하고 상처가 없으며 정상인 것	거의 청결하고 상처가 없으며 약간 이상이 있는 것	약간 오염되었고 상처가 있으며 이상이 있는 것	난각에 상처가 있고 심히 오염되었으며 난각의 형상 조직이 심히 불량한 것	
	난 황	중심에 위치하여 윤곽이 얇게 볼 수 있는 것으로 결점이 없는 것	거의 중심에 위치하여 윤곽은 거의 명확하며 약간의 결점이 있고 약간 퍼져 평평한 것	중심으로 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평면끝로 보이며 꽤 퍼져서 평평하고 약간의 결점이 있는 것	난황난백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혈피 기타의 이상물질을 함유하는 것	
	난 백	투명하고 견고한 것	투명도가 약간 약한 것	투명도가 약하며 액상이고 적은 피덩이가 있는 것		
	기 실	깊이가 4mm 이내로서 거의 일정한 것	깊이가 8mm 이내로서 약간 이동한 것	깊이가 8mm 이상으로서 기포를 함유하고 크게 이동한 것	이상한 냄새가 있는 것	
난각을 깬 경우	확산면적	적은 것	보통인 것	꽤 넓은 것		
	난 황	등글게 쌓아 올라간 것	약간 평평한 것	평평한 것		
	농훈난백	대량으로 쌓아 올라가 난황을 잘 포위한 것	소량으로서 평평하게된 것	거의 없는 것		
	수양난백	소량인 것	보통량인 것	대량을 차지한 것		

※ 등의품중 내용물이 누출한 것, 다량의 혈액을 함유한 것, 녹색난백인 것 및 부패한 것은 식용부적합품으로 제외한다.

◇ 개정이유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처리법으로 개정(법률 제3,763호, 1984.12.31)되어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관리업무가 보건사회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관업무에 관련된 조항을 정리하고 그동안 혼령으로 운영하여 오던 도축장 및 집유장과 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 기구, 포장등의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이 규칙에 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일부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관리업무가 농수산부에서 보건사회부로 이관됨에 따라 축산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수육, 유, 난의 가공품 및 동가공장에 관한 관계규정을 삭제, 정리함(영 제2조, 제7조제1호, 제3호, 제35조제2항 및 제36조 등)

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검사를 받

고자 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도축하는 날의 10일전까지 검사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도축하는 날의 3일전까지 검사신청을 하도록 신청기간을 완화함(영 제27조제3항).

다. 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 기구, 포장등의 제조업을 상속받거나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할 때와 제조업을 휴지, 재개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함(영제37조제4항).

라. 용기등의 제조업소의 작업실면적 기준을 종전의600제곱미터에서 우유통 및 우유병 종이마개의 제조업소는200제곱미터로, 종지로 된 우유포장용기, 착유기, 냉각기 및 집유탱크의 제조업소는 330제곱미터로 각각 완화함(영 별표11).

마. 종래 혼령으로 운영하여 오던 도축장 및 집유장과 용기등의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이 규칙에 정함(영 별표23). (농수산부 제공)

한국가금학회 총회 개최

- 8 월 17일 건국대 축산대 강당 -

한국가금학회(회장 오봉국) 정기총회가 8월 17일 건국대학교 축산대학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산란저하요인과 대책에 대한 심포지움도 가질 예정이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닭고기요리솨씨대회 참가환영

본회는 닭고기의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제1회 닭고기 요리솨씨대회를 개최한다(월간양계 8월호 p.99 참조).

일반 주부 및 관심있는 분들의 참가를 환영하며, 요리강습회도 가질 예정인바 독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바란다.